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반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략) ..... .....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 ..... (생략)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1.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2. 2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 2. 22
- 다.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유병식)

가. 제출이유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및 방법
-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가. 동조례(안)의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하며, 과태료 부과는 공중위생법 제43조 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나. 동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과처분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쾌적한 환경확보 및 급수·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다. 향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질의(정연우 위원) : 공중이용시설은 마포구지역에 몇개소가 있는가?
- 답변(위생과장 유병식) : 공중이용시설 신고 대상은 157개이고, 이중 149개소는 신고되어 있으며 8개건물은 현재 신고중에 있음.
- 질의(황태식 위원) : 주민을 위한 행정 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제정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
- 답변(위생과장 유병식) :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하는등 45만명의 구민이 좋은 실내환경에서 숨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심하지 않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274
----------	-----

제출년월일 : 1994. 2. 2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 환경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안 제3조)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및 방법(안 제6조)
-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안 제8조)

3. 제정근거

- 공중위생법(1991. 3. 8 법률 제4339호) 제43조, 제44조
- 공중위생법시행령(1990. 4. 14 대통령령 제12982호) 제28조
-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 【보위65444-287('93. 2. 4)호】

4. 조례(안) : 별 첨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규정에 의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분장)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의 징수관, 분임징수관, 수입금출납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고 주관부서는 위생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이 조례의 과태료부과대상은 법 제43조 제5호 내지 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동일시점 적발당시, 위반내용이 2이상일 때에는 중한처분기준(중한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

다)에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산정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종전에 적발되었으나, 추후 재적발될 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회수에 누가 된다.

제5조(위반행위조사 등) ① 구청장이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시설 등을 조사·확인한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결과 제3조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산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영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주기 위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행하는 통지는 제3호서식의 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부과처분에고서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처분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통지서 및 다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위반사항
3. 과태료금액
4. 납부기한
5. 납부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④ 과태료부과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상과 별지 제7

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수납부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독촉) 제6조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제11호서식의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신청서에 의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로 한다.

제9조(준용) ①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국제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과태료부과·징수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게 부과·징수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처분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관련)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아래에서 “법”이라함은 “공중위생법”을 말한다.)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 근거 법령	과 태 료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위반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법제43조 제5호	20만원	30만원	40만원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43조 제5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생관리기준을 지키기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가. 실내환경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나.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가 불량한 자 다.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한 자 라. 청소 및 소독상태가 불량한 자	법제43조 제6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4.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제43조 제7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법제43조 제8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6.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43조 제9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7.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제43조 10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산 출 조 사 서

위반사항	대상시설종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법적용조항	
과태료 산출				
조사일자				
조사자	직명			
	성명	(인)		
	계	계	장	과
			장	
				상기와 같이 산출·조정 하고자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중이용시설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처분예고 계 호			
과 태 료 처 분 대 상 자	성 명		대 상 시 설 종 류
	주 소		명 칭
위 반 사 랑	적 발 일 시		
	위 반 내 용		
	위 반 근 거 법	공중위생법 제43조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예 정 금 액	금 액		
	산 출 기 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3조 제 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 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동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마포구청 위생과(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75-3)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중위생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1부. 끝.

마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납부통지서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익 (목)과태료(공중위생법위반)	
위반사항		
금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번창구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위의 금액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부과되 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일부인	
19 . . . . .		
<b>마포구청장 (인)</b>		

(수납은행 보관용)

# 영수필통지서 (1)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익 (목)과태료(공중위생법위반)	
위반사항		
금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 . . .	수입 일부인	
은행	지점(인)	
<b>마포구청장 귀하</b>		

(구정보관용)

# 영수증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익 (목)과태료(공중위생법위반)	
위반사항		
금액		원
납부기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 . . . .	수입 일부인	
은행	지점(인)	

(별지 제6호 서식)

## 과 태 료 부 과 및 수 납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분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고 지 금 액	취 소 (변 경) 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별지 제9호서식)

재 호

###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무자주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 초 납 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 독촉통지서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 입 과 목		(관)임시적세의수입(항)잠수입 (목)과태료(공중위생법위반)	
위 반 사 항			
금 액		원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납 부 장 소		시내 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번창구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 제외)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수 입 일 부 인	
19 . . . . .			
<b>마 포 구 청 장 (인)</b>			

(수납은행 보관용)

# 영수필통지서(1)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 입 과 목		(관)임시적세의수입(항)잠수입 (목)과태료(공중위생법위반)	
위 반 사 항			
금 액		원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 . . .		수 입 일 부 인	
은행 지점(인)			
<b>마 포 구 청 장 귀하</b>			

(구정보관용)

# 영 수 증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세 입 과 목		(관)임시적세의수입(항)잠수입 (목)과태료(공중위생법위반)	
위 반 사 항			
금 액		원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 . . . .		수 입 일 부 인	
은행 지점(인)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공중위생법 제43조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한 이 의 제 기 자	주 소		
과 태 료	과태료납부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처 분 내 역	부 과 관 청	이 의 제 기 일 자	

-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마 포 구 청 장 (인)